

지스트, 제9대 총장 선임 절차 본격화

- 신임 총장 후보자 모집 위한 초빙공고 게시...1월 16일~2월 5일 3주 간 지원서 접수



▲ 지스트 행정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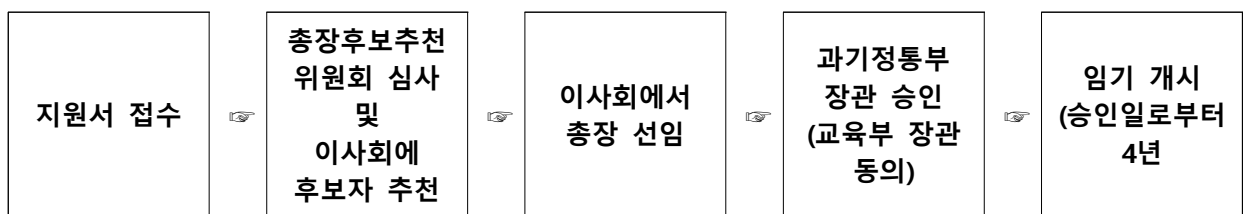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기선)가 **제9대 총장 선임**을 위해 **총장 초빙공고**를 내고 **신임 총장 후보자 모집**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스트 이사회(이사장 한문희)는 **1월 16일(월) 총장 초빙공고**를 내고 **2월 5일(일)까지 제9대 총장 지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초빙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3주(21일) 동안 진행되는 후보자 지원서 접수가 끝나면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교육부 장관 동의)**을 받아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참고] 지스트 총장 선임 절차



특히 이번 총장 선임부터는 처음으로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총장후보발굴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총장 후보로 적합한 인사를 발굴**하고 **응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스트 이사회는 "올해 설립 30주년인 만큼 지스트의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리더십과 도덕성, 열정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총장 초빙공고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초빙공고

광주과학기술원(GIST, www.gist.ac.kr)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거,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1993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중심대학입니다.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한 GIST는 QS 세계대학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등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2010년 설치한 학사과정은 혁신적인 교육을 강조하며 기초과학 실력과 폭넓은 인문소양을 두루 갖춘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GIST의 미래를 함께할 비전과 인품, 청렴성과 리더십을 갖춘 총장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 가. 광주과학기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교직원을 총괄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
- 나. 광주과학기술원을 세계 일류 연구중심 대학원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력과 실천력을 갖추신 분
- 다.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
- 라. 광주과학기술원 정관 제19조^{하단참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소정양식)
- 지원자 사전 질문지 1부
- 주요 업적 기술서 1부(A4 5매 이내)
- 기관 발전 및 경영계획서 1부(A4 5매 이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방법: 직접 제출, 등기우편 또는 e-mail (board@gist.ac.kr) 제출 가능

※ e-mail 제출 시 사전 전화문의 요망

□ 제출기한: 2023. 2. 5.(일) 18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가능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임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처: (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3층 이사회 사무국(기획팀)

□ 문의: (Tel.) 062-715-2975 (담당자: 유상훈) (Fax) 062-715-2979 (e-mail) board@gist.ac.kr

<참고> 광주과학기술원 정관 제19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23. 1. 16.



광주과학기술원 이사장